



제312회 남양주시의회(제1차정례회)
제1차 자치행정위원회

남양주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
폐지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5. 6. .

자치행정위원회

남양주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폐지조례안

1. 제안경과

-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- 동 조례는 행정사무의 수행, 공익목적의 달성 또는 시책 추진에 기여한 민간인에게 실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 대상 및 기준을 규정한 조례이나
- 현재는 개별 법령 및 조례,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 따라 민간인에 대한 보상(포상)이 이루어지고 있어 폐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남양주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」 폐지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1
- 나. 예산조치 : 붙임2 (비용참조)
- 다. 관련부서 : 예산과
- 라. 입법예고 : 2025. 4. 3. ~ 2025. 4. 23.(20일간) /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민간인에 대한 실비 지급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, 현재는 상위 법령과 개별 조례 등에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본 조례에 대한 실효성이 낮아 폐지하려는 안건으로
- 각종 행사 등의 참석자, 자원봉사자, 불법행위의 신고자 등에 대한 실비 보상은 관계 법령 및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 따라 집행되고 있어, 본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
☑ 「남양주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」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22조 및 「지방재정법」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동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실비보상의 원칙) ①시장은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.

②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행정사무의 수행, 공익목적의 달성 또는 시책의 추진에 기여한 주민에게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.

제3조(지급대상자) 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호 와 같다.

1.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의 신고자

- 가. 환경오염행위
- 나. 불법선거운동행위
- 다. 공중 및 식품위생관련 위법행위

2.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(자원)봉사자

- 가. 청소년 상담
- 나. 여성 및 가정문제 상담
- 다. 소비자 상담
- 라. 물가모니터
- 마. 자연보호 · 국토대청결운동
- 바. 교통정리 및 교통질서 캠페인

3.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행사참석자

- 가.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행사
- 나. 산불예방 행사
- 다. 시민의날 행사
- 라. 기타 시장이 주관하는 주요행사

4. 아르바이트 학생

5. 기타 시정에 협조한 정도가 현저한 자

제4조(지급기준) ①보상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그 지급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.

제5조(지급절차등) 보상금은 남양주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지급하되 세부적인 지급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 : 남양주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폐지조례안

나. 재정 수반 요인 : 해당사항 없음

2. 미 첨부 근거 규정

「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
3. 미 첨부 사유

「남양주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」는 행정사무의 수행, 공익목적의 달성 또는 시책 추진에 기여한 민간인에게 실비를 지급하기 위해 지급 대상 및 기준을 규정한 조례였으나, 개별 법령 및 조례와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 따라 민간인에 대한 보상(포상)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 효용성이 없어져 폐지하는 사항으로 예산상 조치가 수반되지 않음

4. 작성자

기획조정실 예산과장 안 병 찬